

『2016년도 세출예산 (재)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2016년도 세출예산 (재)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

- 출연 예정액 : 금700백만원
- 출연 필요성
 - 지역우수인재 육성과 명문학교 육성지원으로 구미교육발전 기여
 -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출신 수도권 진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여건 조성
- 출연근거법령
 -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(기금 출연)
 -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(사업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

○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(재)구미시장학재단에 2016년도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기탁금 550백만원(대구은행 400백만원, 농협 150백만원) 및 서울 구미학숙 운영비 150백만원 등 총 70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결과

본 동의안은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(재)구미시장학재단에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 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과 수도권 명문학교 면학환경 조성으로 구미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